

업 무 협 약 서

Mobility Bank 프로젝트(이하 "Mobility Bank") 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한국자활기업협회 (이하 "참여사"), (재)중앙자활센터 (이하 "지원기관"), SK네트웍스(주) (이하 "SK네트웍스") 3자가 Mobility Bank에 성실히 참여하고, 지원받은 차량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사는 Mobility Bank에 참여하는 자활기업들을 대표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 (각 당사자의 역할)

1. 참여사

- ① Mobility Bank의 취지에 부합되는 차량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
- ②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차량운영 및 관리 : 실 차량 사용 현황 조사, 자활기업 평가 등의 관리감독
- ③ SK렌터카 대여 계약 사항 준수
: 계약 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 시, 차량 회수
- ④ 지원기관 및 SK네트웍스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적극 협조
: 요청 시, 관련 자료 제출

2. 지원기관

- ① 참여사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사회적 가치 측정에 SK네트웍스와 적극적 협업 관계 유지
- ③ 참여사의 부적절한 목적의 차량 사용 인지 시, SK네트웍스에 통지 의무

3. SK네트웍스

- ① Mobility Bank의 전반적 운영 지원 및 차량(SK렌터카) 지원
- 지원 내용 : 다마스 차량 (SK렌터카 보유 차량 중 선별)

- 지원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무상 제공
- ② 지원차량을 통해 자활기업이 발생시킨 사회적 가치 측정
- ③ 지원된 차량에 Mobility Bank 브랜드 및 로고 외 참여사, 지원기관의 브랜드 및 로고 부착 협조

제3조 (일반사항)

1. 참여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Mobility Bank의 로고를 참여사 및 지원기관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SK네트웍스의 판단 하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홍보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자활기업과 SK네트웍스 간 지원되는 차량의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양 당사자간 별도로 체결되는 자동차대여계약(자동차대여약관 포함)이 적용된다.

제4조 (협약기간 및 효력)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3당사자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협약은 협약 만료 60일 전에 3당사자 상호 서면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및 보안)

참여사, 지원기관 및 SK네트웍스는 본 협약의 체결 사실 및 그 내용,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본 협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 행정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해지)

1. 참여사 및 지원기관, SK네트웍스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두 당사자 중 일방이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반한 당사자 및 다른 일방에 대한 일방적인 서면 의사표시로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자활기업과 SK네트웍스가 체결한 자동차대여계약(자동차대여약관 포함)에 부속된 Mobility Bank 추가약정서 상의 제5조 해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3. 본 조에 의한 본 협약의 해지는 각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신의성실의 의무) 각 당사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두 당사자의 명예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협약 상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일방 당사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두 당사자 모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본 협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임 등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적립금 운영)

참여사와 지원기관은 상호 합의 하에 지원받은 차량의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적립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규모와 적립방법 등은 별도로 서면 합의한다. 향후 적립금의 사용은 모빌리티를 통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3부를 작성하여 3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8년 10월 24일

“참여사”

한국자활기업협회

서울 중구 다산로 18길 29 중앙빌딩

협회장 오 인 숙 (인)



“지원기관”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3길 삼창빌딩

원장 이 병 학 (인)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주)

서울 중구 남대문로 90 SK명동빌딩

대표이사 박 상 규 (인)

